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과세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당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현지 개량사업지구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 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9.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長 提出)

10. 서울特別市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49分)

○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 以上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生活環境委員會 權赫柱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一括해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柱議員 生活環境委員會所屬 權赫柱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本議員이 우리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査 議決한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本會議에 上程된 2件의 條例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3月 23日 第1次 生活環境委員會를 開催하여 執行部의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듣고 충분한 質疑 答辯